

의안번호	제 4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7월 일 (제 292 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7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연월일 : 2010. 7.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함

- 1)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에 관한 사항(다만, 학교 신설, 학교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은 제외)을 추가함(안 제5조 제25호)
- 2) 관할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제2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규) 발췌 : 붙임과 같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2010. 6. 11. ~ 2010. 6. 17.
- 2) 예고결과 제출의견 및 반영 여부 : 붙임과 같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관련여부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각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6호를 삭제한다.

2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 (다만, 학교신설, 학교 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25호 개정규정 중 이 조례 시행전에 입찰진행 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된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 24. (생략)</p> <p>25. <u>관할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u></p> <p style="padding-left: 40px;">가. ~ 바. (생략)</p> <p>26. <u>관할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u></p> <p>27. (생략)</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p> <p>1. ~ 24.(현행과 같음)</p> <p>25. <u>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 (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u></p> <p style="padding-left: 40px;">가. ~ 바. (현행과 같음)</p> <p>26. < 삭 제 ></p> <p>27.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규) 발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예고 기간** : 2010. 6. 11 ~ 2010. 6. 17

□ **제 출 자** : 시설과장

제출분야	제 출 의 건		반영 여부
	개 정 안	변 경 요 구	
시설업무 이관범위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2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단, 학교신설, 전면개축, 전면리모델링, 주요 정책사업은 제외) 가.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나.학교 시설의 건축등과 관련된 사항 다.학교 시설 사업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 라.청문 마.감독등과 관련된사항 바.준공검사등과 관련된 사항	(단, 학교신설 및 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	반영
시설업무 이관에 따른 시행 시기 조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조 제 25호의 개정 부분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미반영

이관시기 미반영 사유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 2010. 9. 1 시행